

행정자치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○○○○공사 미지급금 채무관리 부적정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내 용

부산광역시에서는 ○○○○○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2006. 3. 23. 부산○○○○○15)와 ‘○○○○○단지 조성사업 협약서’를 체결하고 진입도로, 쓰레기처리장, 하수도부담금 등 공공기반시설 사업시행과 비용부담은 부산광역시가 담당하기로 하였다.

이후 위 관서에서는 가용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공공기반시설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없게 되자 2009. 12. 24. 변경협약을 체결하여 공공기반시설 사업을 부산도시공사의 비용부담으로 먼저 시행하게 한 후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를 보전하기로 하였다.

그러나 위 관서에서는 2016. 12. 31.까지 ○○○○공사가 대행하여 집행16)한 사업비 71,227백만원을 미지급17)하고 있다.

「지방회계법」 제5조 및 제16조,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, 제11조, 제12조, 「지방재정법」 제6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회계실체가

15) 당시는 부산광역시○○○○○○라는 명칭을 사용함

16) 부산○○○○에서도 자체 재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어 공사채 발행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음

17) 부산○○○○에서는 부산광역시의 미지급 공사대금을 결산서상에 “기타미수금”으로 관리하고 있고

과거 사건의 결과로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에는 부채로 인식하고 이를 결산서(재무제표)에 사실 그대로 작성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시하고 지방의회 등에 보고하여야 한다.

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○○○○공사에 지급하여야 할 사업비 71,227백만원을 결산서에 부채로 반영하여 재정운용 상황을 사실대로 관리·공개하여야 했다.

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○○○○공사가 대행하여 집행한 사업비 71,227백만원을 부채로 인식하고 있지 않고 있다가 정부합동감사기간 중 2017. 3. 21. 이를 부채로 반영하였다.

그 결과 위 관서의 재정운용 상황이 실제와 다르게 관리·공개되고 있어 채무관리 업무에 혼선을 초래하였고 장기간 사업비를 미지급¹⁸⁾함에 따라 ○○○○공사의 금융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주의] 장기미지급금을 부채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등 결산업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18) 부산광역시에서는 ○○○○공사에 미지급된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한 예산을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였음